

수원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1가합255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길

피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기철

변론 종결2022. 3. 2.

판결 선고2022. 3. 23.

주 문

1.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7. 24. 접수 제1346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C는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1. 5. 24. 접수 제1086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주식회사 E과 부부인 F,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7453)를 제기하여 2016. 10. 19. '주식회사 E, F,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5. 확정되었다.

○ D는 2017. 5. 11.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유일한 부동산으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였다.

○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17. 7. 13. 피고 B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1. 7. 24.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34625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21. 5. 24. 피고 C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8674호로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7. 5. 11. D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 8. 24.에서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D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행위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원고가 D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D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C의 경우 2021. 5. 24.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불과 3개월 전이다).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D를 상대로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3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① 2017. 1. 25. F 소유였던 거제시 G 전 301m²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H)에서 143,030,452원을 배당받은 사실, ② 2017. 4. 19. F과 D가 1/2씩 공유하였던 서울 강동구 I아파트, J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K)에서

191,391,129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를 별지 피보전채권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원고는 D를 상대로 1,735,578,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D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64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가 본인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D는 2017. 5. 11.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D는 2017. 7. 13.경과 2021. 5. 24.경 아래 각 표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017. 7. 13. 기준]

1	ㄴ 예금1) =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의 2,434,262원 +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의 1,427,957원	3,862,219원	L	11,497,582원
2	M 예금	1,266,089원	M 대출금	최대 140,000,000원
3	이 사건 아파트	약 210,000,00원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1,735,578,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21. 5. 24. 기준]

1	L 예금2) =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의 703,059원 +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의 6,003,477 +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의 6,300,000원	13,006,536원	L	11,497,582원
2	M 예금	390,089원	M 대출금	최대 140,000,000원
3	이 사건 아파트	최대 350,000,000원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	1,735,578,4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F과 D3)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고, F과 D는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자신들의 종전 채무를 변제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D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을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D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이 사건 아파트가 D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 7,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D의 배우자인 F의 친동생이고, 피고 C는 F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면서 F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지인으로, F·D와 피고들은 친밀한 인적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F이 2018. 11. 12. 피고 C로부터 380,000,000원을 받으면서 작성한 지불각서에 따르면, 피고 C는 F의 월급 전액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피고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F의 피고 C에 대한 380,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변제 계획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F·D의 경제적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 외 피고들이 F 내지 D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 원인이 소비대차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을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평근

판사김재학

판사김주연

별지

1) =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의 2,434,262원 +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의 1,427,957원

2) =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의 703,059원 +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의 6,003,477 +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의 6,300,000원

3) 피고들은 F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 주장하다가도 배우자인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2021. 12. 17.자 준비서면 8쪽 등 참조).